

제2025-58호 2025년 6월 30일(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 화 합 열 린 도 시 인 재 육 성 산 업 도 시 문 화 예 술 복 지 도 시 해 양 관 광 휴 양 도 시 기 후 변 화 선 도 도 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조 례

○ 여수시 조례	제2206호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여수시 조례	제2207호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여수시 조례	제2208호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여수시 조례	제2209호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여수시 조례	제2210호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24
○ 여수시 조례	제2211호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28
○ 여수시 조례	제2212호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여수시 조례	제2213호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 여수시 조례	제2214호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43
○ 여수시 조례	제2215호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 여수시 조례	제2216호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64
○ 여수시 조례	제2217호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	70
○ 여수시 조례	제2218호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 여수시 조례	제2219호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77

규 칙

○ 여수시 규칙	제859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84
○ 여수시 규칙	제860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1
○ 여수시 규칙	제861호	여수시 리·통·반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7
○ 여수시 규칙	제862호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8
○ 여수시 규칙	제863호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일부개정규칙	125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권기영



여수시 조례 제2206호

붙임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수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이 속한 주 또는 그 전후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을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민 체육대회 행사

3. 각종 민속·문화행사

제4조 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수시체육회 수석부회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민의 날) 여수시민의 날 (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5일로 한다. <u>다만, 국가적 행사 또는 공휴일과 겹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 우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u>	제2조(시민의 날) ----- ----- ----- . <u><단서 삭제></u>
제3조(행사) <u>시민의 날을 기념하 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제3조(행사) <u>여수시장은(이하“시 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이 속한 주 또는 그 전후 주 의 금요일과 토요일을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한다.</u> <u>다만, 국가적 행사 또는 기타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u>
1. (생략) 2. <u>각종 민속·문화행사 및 체 육행사</u> <u><신설></u> 3.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시민 체육대회 행사</u> 3. <u>각종 민속·문화행사</u>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기본계획수립) <u>여수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u>	제4조(기본계획수립) <u>시장</u> ----- ----- ----- .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 2. (생략) 3. <u>여수시통합체육회상임부회장</u> 4. ~ 6. (생략) ③ · ④ (생략)	음) ②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여수시체육회 수석부회장</u>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7,057/256



여수시 조례 제2207호

붙임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성과평가 시 주요지표

제7조 제2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2조의 성과평가 결과

제21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주요지표에 대해서 성과평가 전 사무감사를 통해 감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탁계획) ② 위탁계획에는	제6조(위탁계획) ② -----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포함되어야 한다.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성과평가 시 주요지표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7조(의회의 동의) ① (생략)	제7조(의회의 동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호의	② (현행과 같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제22조의 성과평가 결과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21조(사무감사) ① (생략)	제21조(사무감사)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주요지표에
	대해서 성과평가 전 사무감사를 통해
	감사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기정기



여수시 조례 제2208호

붙임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정 대리인의 운영

제22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선정 대리인

제4장의2에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2조의3(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선정 결과를 규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및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2조의4(선정 대리인의 운영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 또는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처리업무 등) ① 납세자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u><신 설></u> ②·③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6조(처리업무 등)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선정 대리인의 운영</u> ②·③ (현행과 같음) <u>제4장의2 선정 대리인</u> <u>제22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u> <u>「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u> <u>제22조의3(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등)</u> ① <u>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u> ② <u>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u>

현행	개정안
<신설>	<u>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u> <u>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u> <u>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선정 결과를 규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u> <u>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u> <u>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및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u> <u>제22조의4(선정 대리인의 운영 등)</u> <u>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u>

현행	개정안
	<u>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u> <u>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u> <u>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u> <u>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u> <u>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 또는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범



여수시 조례 제2209호

붙임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어기본법」 제13조”를 “「국어기본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등”이란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공문서 등의 우리말 사용)”을 “(공문서등의 우리말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문서 등”을 각각 “공문서등”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제8조로 하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공공기관등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등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국어와 합성하여 행사명을 정한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게 하여 외국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한글 작성 및 우리말 사용 실태와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등)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5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포상)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를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국어기본법」 제13조----- ----- ----- ----- -----. 4. “공공기관등”이란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등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5. · 6. (생 략)

제4조(공문서 등의 우리말 사용)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 등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우나 어렵거나 낱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1. ~ 4. (생 략)

② 공공기관등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4조(공문서등의 우리말 사용) ①

----- 공문서등-----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공문서등-----

-----.

제5조(공공기관등의 명칭 등) ① 공

공기관등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국어와 합성하여 행사명을 정한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게 하여 외국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한글 작성 및 우리말 사용실태와 제6조에 따른 광고물

제5조(우리말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생략)

② 우리말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신설>

<신설>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8조(우리말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등) 시장은

제6조 ~ 제11조 (생략)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신설></u>	<u>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u> 제11조 ~ 제16조 (현행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u><삭제></u> 제17조(포상)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를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기근기



여수시 조례 제2210호

붙임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1부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

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11호

붙임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1부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8.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사업
4. 야간관광 상생 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
7.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8.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의 참여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 등의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역사
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12호

붙임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전문인력)”을 “(전문인력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운영을 제외한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 제5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또는 주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자료

제8조제1항 중 “안 제7조”를 “제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 제7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인력) (생략)		제4조(전문인력 및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시장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운영을 제외한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 <u>안</u> 제5조의 시행 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조사대상) 제5조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시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또는 주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자료	
2. ~ 6. (생략)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제8조(기록물의 생산) ① <u>안</u>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 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의 생산) ① 제7조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도시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① (생략)		제10조(도시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u>안</u>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 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제7조	----- ----- ----- ----- -----.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213호

붙임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2.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등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원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외자(사망일 현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과 그 외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설화장시설 사용에 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을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제21항”을 “제32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종류(제3조의2제2항 관련)

구분	지 원 사 업
1. 소득증대 사업	○ 농림업·축산업 시설의 설치
	○ 상·공업시설의 설치
2. 복지증진 사업	○ 사회복지시설 관련사업
	○ 도로시설 관련사업
	○ 상·하수도시설 관련사업
	○ 교육·문화시설 관련사업
	○ 운동·오락시설 관련사업
3. 그 밖의 사업	○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 단,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역화폐 지원은 지원액의 30% 이내 ○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상하수도 사용료·전기료·주민건강진단비 등 주민지원사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u>생활개선사업비</u> 2. <u>주민숙원사업비</u> 3. <u>급수시설 유지 관리비</u> 4. <u>위생해충 방역 유류비</u>	제3조의2(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 ----- ----- -----. 1. <u>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u> 2. <u>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등 복지증진 사업</u> 3.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u>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원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u>
제9조(사용자격) 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화장 또는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 4. (생략) 5. <u>관외자(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사망 당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를</u>	제9조(사용자격)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관외자(사망일 현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과 그 외 타지역에</u>

말한다). 다만, 공설화장시설
사용에 한정한다.

② (생 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
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
용료 등”이라는)는 별표 1과 같
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
료 등의 전액을 환불하고, 시설
의 사용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
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
료 등을 반환한다.

제12조(금지행위) ① (생 략)

**제17조(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
지)**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관내
에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설화장시설 사용에 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
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
용료 등”이라는)는 별표 2과 같
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
료 등의 전액을 환불하고, 시설
의 사용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
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
료 등을 반환한다.

제12조(금지행위)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7조(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
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

위탁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동안의 투자비는 시에 귀속된다.

④ (생략)

제27조(개장명령 등) 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거나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주어 유골 또는 분묘를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로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3. ~ 5. (생략)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의사상자, 「상훈법」에 따른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개장명령 등) ① -----

제32조제1항·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사용료 감면) -----

-----.

1. ~ 5.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3. ~ 5. (현행과 같음)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및 이
에 준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시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

7. ~ 9. (생 략)

제34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봉안시
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의사상자,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및 이
에 준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시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 [본호 신설 2016.
4. 22.]

6. · 7. (생 략)

② (생 략)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7. ~ 9. (현행과 같음)

제34조(사용료 감면)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장수축하
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14호

붙임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여수시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제4조(지급물품) 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이내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② 지급 물품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며, 물품 선정 시 지급대상자의 선호도와 실효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6조(신청안내) 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읍·면·동장은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1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101세 이상이 된 사람은 제2조제1호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 이 경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지 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신청내용		
제출서류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 시)	
신청시 유의사항	※ 지급 제외 - 장수어르신이 신청일 또는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 장수어르신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전액 환수 -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여수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

지 급 대상자 (위임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대리인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위임 사유

위임자(본인)는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illegible]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15호

붙임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교육경비 보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경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사업
2.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를 “사항을 심의·의결하기”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4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인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2인
3. 교육장이 추천하는 여수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간부 2인
4. 시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전문가 3인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업무주관과장”을 “업무주관 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제8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교육경비보조와”를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과”로 한다.

나. 보조사업의 적정여부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다.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사항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9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을 “학교장과 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보조여부”를 “보조 여부”로, “여수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어서”를 “있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장과 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가”를 “학교와 교육지원청이”로,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부목적의외”를 “교부 목적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제1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장과 교육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
3. 일부 학생을 위한 사업 및 교육청 고유의 사무
4. 여수시와 여수시민의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설치된 학교 시설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학교시설의 개방) 각급 학교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을 “학교장과 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를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년도 보조사업별 교부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지연에 따른 대면 보고가 어려울 경우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중전의 제14조) 중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8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교육경비보조에”를 “교육경비 보조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신청인	①학 교 명 (학교장)	()		②사 업 자 등록번호	
	③소 재 지				
④보조사업의 목적					
⑤보조사업의 내용					
⑥사용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총 금 액		자 부 담		보조금액	
⑦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완료예정일	
⑧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여수시 <u>교육경비 보조에</u>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참고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여수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 ----- ----- --- <u>교육경비 보조</u> ----- ----- -----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중·고교 우수학생 장학금 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2. 우수교사 및 우수인재 육성학교 인센티브 지원 3.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초·중·고교 특기적성반, 산학연계반, 자격증 취득반 등 지원 5.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시설 6.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8.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9.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10. 기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경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사업 2.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4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u>시장의 자문에 응하기</u> 위하여 여수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 ----- <u>사항을 심의·의결하기</u> ----- ----- -----.
제5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4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시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2인과 교육관계전문가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 5. 18, 개정 2007. 5. 31, 2009. 5. 19) ④ (생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u>교육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4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1.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인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2인 3. 교육장이 추천하는 여수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간부 2인 4. 시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전문가 3인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u>업무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u> ②·③ (생략)	제7조(간사와 서기) ① ----- ----- ----- <u>업무주관 과장-</u> ----- <u>업무담당 팀장---</u>.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u>다음</u>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u>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u> 가. (생략) 나. <u>보조사업의 적정여부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u> <신설> 3. <u>기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u>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기능) ----- <u>다음</u> 각 호의 -----. 1. (현행과 같음) 2. <u>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u> 가. (현행과 같음) 나. <u>보조사업의 적정여부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u> 다. <u>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사항</u> 3. <u>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과</u> -----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 -- <u>출석으로 개의하고,</u> ----- ----- <u>. 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u>학교의 장</u>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보조사업에 <u>소요되는</u>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생략) 5. <u>기타</u>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보조사업에 <u>소요되는</u> 경비의 사용방법 4. (생략) 5. <u>기타</u>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u>보조여부</u>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u>여수교육청 교육장</u>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생략)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u>학교장과 교육장</u>----- ----- ----- -----. 1. 2. (현행과 같음) 3. ----- <u>필요한</u> -----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필요한</u> -----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 ③ ---- <u>제1항에 따른</u> ----- ----- ---- <u>각 호</u>----- - <u>보조 여부</u>----- ----- <u>교육장</u>----- -----. 1. 2. (현행과 같음) ④ ----- <u>있어</u> ----- -----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 <u>학교의 장</u>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u>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u>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u>교부목적의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u> 2. (생략) 3.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u>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u> 〈신설〉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 <u>학교장과 교육장</u>----- -----. ② ----- <u>학교와 교육지원청이</u> ---- <u>각 호</u>----- -----. 1. ----- <u>교부 목적외</u>----- ----- 2. (현행과 같음) 3. <u>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u> 4. <u>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u>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u>학교의 장</u>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u>학교장과 교육장</u>----- -----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13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u>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u> 2. <u>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u> 3. <u>일부 학생을 위한 사업 및 교육청 고유의 사무</u> 4. <u>시와 시민의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설치된 학교 시설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u>

현행	개정안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u>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u> 2. <u>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 보고서</u> 3. (생략) 4. <u>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u>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u>학교</u>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 ----- <u>학교장과 교육장</u> ----- ----- -----. <u><삭제></u> <u><삭제></u> 1. (현행 제3호와 같음) 2. 그 <u>밖</u>에 ----- ② ----- ----- ----- <u>학교 및 교육지원청</u> ----- ----- -----. ③ <u>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④ <u>시장은 전년도 보조사업별 교부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지연에 따른 대면 보고가 어려울 경우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u>
<u><신설></u>	제15조(학교시설의 개방) <u>각급 학교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 ----- ----- -----.
제15조 (생략)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제8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교육경비보조에”를 “교육경비 보조에”로 한다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현



여수시 조례 제2216호

붙임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1부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 작성)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실무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여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민참여 및 지원) ①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대행 등)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 1. 1.부터 시행한다.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17호

붙임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내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알리고, 임차인에게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책무) ①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통지받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하자 보수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임대료 증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지은기



여수시 조례 제2218호

붙임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9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 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 물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공장부지내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규모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의2에 따른 농막(연면적 20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 적이 아닌 경우로 <u>한정한다.</u>) 및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 제곱미터 이하일 것)	9. ----- ----- ----- ----- <u>한정한다</u>), <u>농촌</u> <u>체류형 쉼터</u> ----- -----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남



여수시 조례 제2219호

붙임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4.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5. “통학로”란 제2조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

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6.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를 위해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7.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8.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란 초등학교등 주변 도로에 어린이 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9. “엘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수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여수시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보행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

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옐로카펫, 횡단보도 투광기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6.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8. 방범용·과속 단속용·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 TV)
9.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호구역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지도)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交通安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 등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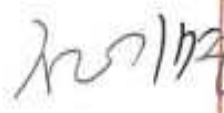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交通安全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2025년 제7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규칙 제859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12.31, 2009.3.16, 2009.6.8, 2009.10.30, 2009.12.31, 2010.3.12, 2010.12.1, 2011.1.17, 2011.9.23, 2011.12.31, 2012.8.10, 2013.1.10, 2013.8.14, 2014.1.13, 2014.2.21, 2014.6.30, 2015.1.15, 2015.6.5, 2016.2.1, 2016.4.22, 2016.8.1, 2016.12.30, 2017.7.3, 2017.12.29, 2018.8.1, 2019.1.2, 2020.1.2, 2020.7.10, 2020.10.12, 2021.1.4, 2021.4.26, 2022.1.3, 2022.7.7, 2022.12.30, 2023.12.29, 2024. 7. 3, 2025. 4. 8, 2025. 7.)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직급별										
총계		1,936	1,113	45	219	91	17	31	128	292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1,887	1,101	45	182	91	17	31	128	292
3	급	1	1							
4	급	13	9	1	2	1				
5	급	86	46	3	6	3	1	1	6	20
6	급	449	278	11	48	16	4	8	39	45
7	급	492	292	24	49	22	5	6	25	69
8	급	507	279	5	58	27	5	9	29	95
9	급	338	195	1	19	22	2	7	29	63
전문경력관(나관계)		1	1							
화	생 방 관 리 원	1	1							
별	정 직 계	2	2							
비 서 요 원 (6 급 상 당)		1	1							
비 서 요 원 (7 급 상 당)		1	1							
연	구 직 계	12	9		3					
학	예 면 구 사	7	7							
기	록 면 구 사	1	1							
농	업 면 구 사	3			3					
해	양 수 산 면 구 사	1	1							
지	도 직 계	34			34					
농	촌 지 도 관	2			2					
농	촌 지 도 사	32			32					

• 일반직과 별정·연구·지도직에 (복수표) 책정된 증원을 포함

[별표 2] (개정 2008.12.31., 2009.3.16., 2009.6.8., 2009.10.30., 2009.12.31., 2010.3.12., 2010.12.1., 2011.1.17., 2011.9.23., 2011.12.31., 2012.8.10., 2013.1.10., 2013.8.14., 2014.1.13., 2014.2.21., 2014.6.30., 2015.1.15., 2015.6.5., 2016.2.1., 2016.4.22., 2016.8.1., 2016.12.30., 2017.7.3., 2017.12.29., 2018.8.1., 2019.1.2., 2020.1.2., 2020.7.10., 2020.10.12., 2021.1.4., 2021.4.26., 2022.1.3., 2022.7.7., 2022.12.30., 2023.12.29. 2024. 7. 3., 2024. 12. 27., 2025. 4. 8. 2025. 7.)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총 계	1,936	1,113	45	219	91	17	31	128	292
정무직계	1	1							
시장	1	1							
일반직계	1,887	1,101	45	182	91	17	31	128	292
3급 계	1	1							
행정	1	1							
4급 계	13	9	1	2	1				
행정	6	5	1						
기술	2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	1			1					
5급 계	86	46	3	6	3	1	1	6	20
행정	17	14	2		1				
해양수산	1	1							
시설	3	3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	1							
행정+독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시설	9	8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공업+환경	3	3							
행정+공업+시설	4	3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3	2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4								4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지+시설	2								2
행정+사회복지+보건+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식품위생+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간호+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간호+보건	1								1
행정+사서+공업+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3	1							2
행정+농업+농지+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2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해양수산+보건+시설	1							1	
행정+보건+공업+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1					
행정+의료기술+시설+방송통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1			1					
6급 계	449	278	11	48	16	4	8	39	45
행정	65	57	5		2	1			
세무	7	7							
사회복지	7	7							
공업	1	1							
해양수산	6	6							
보건진료	6			6					
환경	3	3							
시설	24	20			1	3			
운전	6	6							
기계운영	1				1				
행정+세무	11	11							
행정+전산	5	5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행정+사회복지	17	17							
행정+사서	8	8							
행정+공업	6	6							
행정+농업	1			1					
행정+농지	3	3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환경	10	10							
행정+시설	24	24							
행정+사무운영	7	6			1				
전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3	3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4	3			1				
공업+화공운영	1	1							
농지+시설	2	2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3			3					
보건+간호	3			3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환경	1	1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서+위생	1	1							
행정+사서+기록연구사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공업+방송통신	3	3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3			3					
행정+농지+시설	5	5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행정+보건+식품위생	3	1		2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2	2							
세무+전산+시설관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5	2			3				
공업+시설+시설관리	1	1							
전산+공업+방송통신	1	1							
농업+농지+시설	2	2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공업+환경+시설	2				2				
농업+수의+농촌지도	2			2					
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9			9					
보건+간호+보건진료	5			5					
행정+세무+전산+사회복지	14						2	6	6
행정+세무+전산+농업	4						1	3	
행정+세무+전산+해양수산	1							1	
행정+세무+전산+식품위생	1							1	
행정+세무+전산+방송통신	4							4	
행정+세무+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세무+보건+간호	1							1	
행정+전산+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방송통신	2		2						
행정+전산+사서+기록연구사	1	1							
행정+전산+공업+보건	2							2	
행정+전산+공업+시설	5	5							
행정+전산+보건+식품위생	1	1							
행정+시설+해양수산+사무운영	3		3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행정+사회복지+공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공업+간호	4							1	3
행정+사회복지+공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농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3	2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30						1	6	23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사서+공업+환경	1	1							
행정+사서+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농업+농지	1							1	
행정+공업+농업+해양수산	2							2	
행정+공업+농지+해양수산	1								1
행정+공업+농지+시설	6	1					1	4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공업+시설+학예연구사	2	2							
행정+공업+방재안전+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농지+시설	2							2	
행정+농업+농지+농촌지도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3						1	2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해양수산+농지+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식품위생+의료기술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보건+환경+시설	1							1	
전산+공업+시설+방송통신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	2			2					
공업·보건·간호·환경	1	1							
공업·보건·시설·방재안전	1	1							
7급 계	492	292	24	49	22	5	6	25	69
행정	107	60	18		2	1	1	4	21
세무	6	6							
전산	5	5							
사회복지	39	16						5	18
사서	1	1							
공업	14	11			3				
해양수산	11	11							
환경	6	6							
시설	40	31		1	3	4	1		
방재안전	1	1							
운전	15	10	2	3					
보건	4			4					
간호	1			1					
의료기술	2			2					
보건진료	7			7					
간호조무	1			1					
행정·세무	21	18						2	1
행정·전산	5	5							
행정·사회복지	27	11						1	15
행정·사서	7	7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0	1		1				5	3
행정·복지	5	4					1		
행정·해양수산	11	8					1	2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16	16							
전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2	2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3	1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공업+방송통신	1	1							
공업+시설관리	2				2				
공업+전기운영	2	2							
공업+기계운영	1				1				
농업+농지	2	2							
농업+수의	1			1					
농업+해양수산	1							1	
농업+농촌지도	2			2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보건진료	1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1					
간호+보건진료	2			2					
방재안전+시설관리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사서	1						1		
행정+세무+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9						1	1	7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사서+화예연구사	2	2							
행정+사서+기록연구사	2	2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9	7			2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1			1					
행정+농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행정+보건+간호	-								
행정+시설+화예연구사	1	1							
행정+화예연구사+기록연구사	-								
전산+공업+방송통신	1	1							
전산+농업+농지	1	1							
사회복지+공업+시설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공업+녹지+시설	5	5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환경+방재안전	2	2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시설+방송통신	1	1							
공업+시설+시설관리	1							1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수의+농촌지도	2			2					
보건+식품위생+간호	1			1					
보건+식품위생+보건진료	1			1					
보건+식품위생+시설	1			1					
보건+식품위생+위생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8			8					
행정+세무+공업+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사무운영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4	2		1					1
행정+사회복지+사무운영+시설	2		2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3	1			2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식품위생+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1
공업+보건+간호+시설	1	1							
공업+보건+간호+방재안전	1	1							
공업+환경+시설+시설관리	1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식품위생+간호+시설	1	1							
8급 계	507	279	5	58	27	5	9	29	95
행정	74	54	3		2	2			13
전산	1	1							
사회복지	38	13					1	3	21
공업	4	4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농업	1							1	
해양수산	5	5							
보건	5	2		3					
의료기술	4			4					
간호	13			6			1	4	2
보건진료	7			7					
환경	4	4							
시설	19	16				3			
방송통신	2	2							
위생	-								
에너지	13	7		4	2				
행정+세무	22	19			2			1	
행정+전산	7	6			1				
행정+사회복지	27	5					1	5	16
행정+사서	9	8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6						3	2	1
행정+농지	3	1						1	1
행정+해양수산	10	7						2	1
행정+보건	4	1							3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16	15							1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사무운영	1	1							
전산+시설	1	1							
전산+공업	1	1							
전산+방송통신	2	2							
사회복지+간호	-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5	4		1					
공업+방재안전	1	1							
공업+방송통신	1	1							
공업+기계운영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농업+농지	2	2							
농업+해양수산	1							1	
농업+농촌지도	5			5					
해양수산+환경	1	1							
시설+토목운영	2	2							
방송통신+통신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보건+간호	13			5					8
보건+보건진료	2			2					
식품위생+위생	1						1		
의료기술+간호	9								9
간호+보건진료	1			1					
방재안전+시설관리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방재안전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5	3	2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1
행정+사서+학예연구사	4	4							
행정+사서+기록연구사	2	2							
행정+공업+환경	5	5							
행정+공업+시설	39	28			7			4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행정+해양수산+환경	5	5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전산+농업+농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공업+농지+시설	4	4							
공업+환경+시설	7	3			4				
공업+환경+방재안전	1	1							
공업+시설+시설관리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2	1			1				
농업+수의+농촌지도	1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8			8					
보건+간호+보건진료	3			3					
행정+세무+전산+사서	1							1	
행정+세무+사회복지+공업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4						2		12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전산+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농업+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식품위생+위생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2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전산+공업+시설+방송통신	2	2							
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간호	4							2	2
공업+보건+간호+환경	3	3							
공업+환경+시설+기계운영	1				1				
농업+농지+해양수산+시설	2	2							
농업+식품위생+간호+농촌지도	1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4	3						1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1			1					
9급 계	338	195	1	19	22	2	7	29	63
행정	44	31		1		1	1	1	9
사회복지	31	4					1	5	21
사서	1	1							
공업	2	2							
농지	1	1							
해양수산	8	8							
환경	1	1							
시설	12	11				1			
방송통신	2	2							
위생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운전	14	8		2			1	3	
토목운영	-								
기계운영	-								
행정+세무	18	15						3	
행정+전산	-								
행정+사회복지	34	8					1	9	16
행정+사서	12	11							1
행정+공업	8	6			2				
행정+농업	6	1		3			1		1
행정+복지	4	4							
행정+해양수산	6	6							
행정+식품위생	-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2	12							
행정+사무운영	6	4							2
전산+사서	1	1							
전산+방송통신	-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								
공업+방재안전	1	1							
공업+기계운영	3	2			1				
공업+시설관리	-								
공업+전기운영	1				1				
농업+보건	1			1					
농업+식품위생	-								
보건+의료기술	8	1		6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1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토목운영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해양수산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농업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6	4	1		1				
행정+사회복지+사서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행정+사회복지+사무운영	1	1							
행정+사서+사무운영	-								
행정+공업+녹지	1	1							
행정+공업+환경	6	6							
행정+공업+시설	27	20			6			1	
행정+공업+방재안전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식품위생+의료기술	1			1					
전산+공업+방송통신	1	1							
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	2							1	1
공업+환경+시설	7				7				
공업+환경+방재안전	4	4							
공업+환경+기계운영	1	1							
공업+시설+방송통신	1	1							
공업+시설+시설관리	-								
농업+식품위생+위생	1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환경	1			1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2	1					1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2							1	1
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7								7
공업+녹지+시설+기계운영	1	1							
공업+환경+시설+시설관리	1				1				
공업+환경+시설+기계운영	1				1				
농업+녹지+해양수산+시설	1	1							
농업+식품위생+간호+농촌지도	-								
전문경력관(나군)계	1	1							
화성방관리원	1	1							
별정직계	2	2							
비서요원(6급상당)	1	1							
비서요원(7급상당)	1	1							
연구직계	12	9		3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한예연구사	7	7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3			3					
해양수산연구사	1	1							
지도직계	34			34					
농촌지도관	2			2					
농촌지도사	32			32					

2025년 제7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서기



여수시 규칙 제860호

붙임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획경제국 경제일자리과의 사무분장표에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1. 민생안정(경제분야)에 관한 사항
2.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청 사무분장표(제3조제1항)

관·과·소	분 장 사 무
기획경제국 경제일자리과	1. 민생안정(경제분야)에 관한 사항(신설) 2.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3.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4. 수출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통상지원 5. 중소벤처기업부 총무계획 수립 6. 여수시 상품권 운영 관리 7. 소비자 보호 및 고발센터 운영 8. 계량기 검사 및 수리·증명업 등록관리 9. 상거래 질서 및 공정거래 사무관리 10. 방문·통신·다단계 판매업 지도관리 11. 대규모 점포 및 대부업 등록에 관한 사항 12. 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13. 공산품 품질관리 및 표준화 사무관리 14. 전남경제살리기 평가사무 15. 새마을금고 관리(정관 변경 인가 등) 16.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1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조정 및 평가 18. 지역 일자리 관련 고용동향 분석·평가 및 통계작성 19. 일자리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 20. 일자리 정부평가 등 준비·수감 21. 공공부분 생활임금 결정 22.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 23. 구인·구직 상담 및 연계지원 24.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등 제반업무 25. 일자리 박람회 추진 26. 기타 일자리 관련 신규 정책 총괄 27. 세대별 적합 직종 및 신직업 발굴

관·과·소	분 장 사 무
	28.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및 실행지원 29. 일자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30. 계층별·연령별·대상별 일자리 시책 발굴 지원 31.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원 3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 33.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3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35. 중장년층(신중년) 일자리사업(시책)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 36. 분야별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총괄 관리 및 협업관계 구축 37. 기타 일자리 창출 정부·전남도 공모사업 추진 38. 청년일자리 사업 업무(청년지원센터 제외) 39. FTA 대책에 관한 사항 40. 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1. 소상공인 지적재산권 취득지원 발굴 육성 42.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자금지원 43. 중소기업 창업지원 육성관리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43.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44. 공장설립(등록) 승인(신고)·변경 및 증명서 발급 업무 45. 테크노파크 업무지원 46. 유망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관리 47. 제조업체 현황관리 48. 중소기업제품 구매관련 업무 49. 공장등록업체 지원 및 관리 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52. 전통시장·상점가 환경개선사업 및 활성화 대책 53.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54. 공설시장 사용허가·취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 55. 전통시장 인정·취소, 상인회·시장관리자 등록·취소 56.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관·과·소	분 장 사 무
	57.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운영 58.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운영 59.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60.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발굴·육성 61.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62. 마을공동체 발굴 및 지원 63.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64. 마을기업 육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65. 마을기업 신규 발굴·육성 66. 협동조합 신고·수리 지원, 현황 관리 67. 공유촉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68. 공정무역활성화 사업 추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본청 사무분장표 기획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신 설> <신 설>	[별표 1] 본청 사무분장표 기획경제국 경제일자리과 1. 민생안정(경제분야)에 관한 사항 2.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25년 제7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리·통·반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규칙 제861호

붙임 여수시 리·통·반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라통반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안]

읍.면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명	리명	반명	관 할 구 역
소라면	죽림1	1반	원죽마을 일원 *경계조정(일부편입)
	관기1	1반	상관북부 *경계조정(일부제외)

읍면명	리명	반명	관 할 구 역
화정면	화산	1	개도리 616, 617, 621, 622, 623, 1063, 1064, 1066, 1068-2, 1069-2, 1079-4, 1088, 1091, 1093, 1094, 1122-1
		2	개도리 452-1, 464, 465, 524, 524-2, 525-1, 574-1, 576, 577, 578, 584, 592, 598-4, 599-1, 603-2, 604-1, 612
		3	개도리 507-2, 509-1, 509-9, 518-2, 532, 532-1, 533, 538, 540, 541, 547, 551, 552, 553, 557-1, 564, 567, 568, 598-3
		4	개도리 506-2, 509-2, 510-4, 511-2, 513-2, 514-1, 515-1, 516-2, 518-5, 523, 528, 529, 530, 536, 629-1, 629-2, 633-2, 634-3, 635-2
		5	개도리 681, 682-1, 682-12, 682-13, 700, 700-2, 700-3, 700-4, 700-10, 700-5, 714-1, 715-2, 741-2, 1854, 1864-3, 1864-15
		6	개도리 716, 716-5, 723-1, 729-2, 736-1, 737, 739-2, 741-1, 741-2, 741-3, 741-15, 744, 산590-1
:	:	:	:
소계	20	67	
:	:	:	:
계	212	881	

<부칙> 읍면동간 경계조정 [신설]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에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편입)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				지 번	지 목	총면적 (㎡)	이동 면적 (㎡)	비 고
시·도	시·군·자치구	구·읍·면·동	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18-8	임	345	345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50	도	7	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50-6	전	109	10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50-7	전	601	60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50-8	전	169	16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1160-1	도	250	25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1-2	임	103	103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1-9	임	207	20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4-2	도	793	793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4-3	임	99	9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4-4	임	1,324	1,324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5-5	임	13	13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5-6	도	31	3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1	임	496	49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2	임	397	39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3	임	257	25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5	임	496	49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6	임	330	33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7	임	397	39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8	임	256	25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9	임	248	24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11	임	821	82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23	임	331	33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36	임	170	17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37	임	9	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38	임	76	7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39	임	118	11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0	임	141	14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1	임	179	17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2	임	249	24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3	임	322	322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4	임	381	38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5	임	68	6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6	임	91	9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7	임	31	3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8	도	46	4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9-1	임	93	93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32-1	임	28	28	

동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제3조 관련)

동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광림동	16	1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01동 201호~210호, 301호~310호, 401호~410호, 501호~510호
		2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02동 201호~207호, 401호~407호 103동 201호~208호, 401호~408호
		3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04동 101호~105호, 301호~305호 105동 101호~107호, 301호~307호 106동 101호~105호, 301호~305호
		4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07동 101호~104호, 301호~304호 108동 101호~110호, 301호~310호
		5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09동 101호~104호, 201호~204호, 301호~304호, 401호~404호 110동 201호~204호, 301호~304호, 401호~404호, 501호~504호
		6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11동 101호~105호, 301호~305호 112동 101호~106호, 301호~306호 113동 201호~205호, 401호~405호
		7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14동 201호~206호, 401호~406호 115동 201호~203호, 301호~303호, 401호~403호, 501호~503호 116동 201호~204호, 301호~304호, 401호~404호, 501호~504호
		8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17동 201호~207호, 401호~407호 118동 201호~206호, 301호~306호, 401호~406호, 501호~506호

동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여서동	2	1	여서동 252~253, 256~261-1, 264~267-1, 274, 287~298-2, 300-1 ~ 310-1, 312, 314 ~ 317
		2	242-1 ~ 242-4, 248 ~ 248-9, 249 ~ 249-3, 250~250-3
		3	382, 383~383-5, 384~384-7, 385~385-5
		4	244~244-8, 245-1~245-16, 246~246-8 917 ~ 922-5
		5	395-1~395-2, 396~396-10, 397~397-5, 398~398-4, 399-1~399-9
		6	381, 386, 397, 391-1~394-5
		7	378~379-5, 388~390-6
		8	374-4 ~ 374-13, 376 ~ 376-8, 377 183-2 ~ 207
		9	374-1 ~ 374-3, 375 ~ 375-13, 380, 380-1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읍·면·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1〕 읍·면·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읍면명	리 명	반 명	관할구역	읍면명	리 명	반 명	관할구역
소라면	죽림	1	원죽마을 일원	소라면	죽림	1	원죽마을 일원 *경계조정(일부편입)
	관개	1	상관북부		관개	1	상관북부 *경계조정(일부제외)
⋮				⋮			
화성면	화 산	1	대동	화성면	화 산	1	개도리 616, 617, 621, 622, 623, 1063, 1064, 1066, 1068-2, 1069-2, 1079-4, 1088, 1091, 1093, 1094, 1122-1
		2	대동			2	개도리 616, 617, 621, 622, 623, 1063, 1064, 1066, 1068-2, 1069-2, 1079-4, 1088, 1091, 1093, 1094, 1122-1
		3	대동			3	개도리 507-2, 509-1, 509-9, 518-2, 532, 532-1, 533, 538, 540, 541, 547, 551, 552, 553, 557-1, 564, 567, 568, 598-3
		4	대동			4	개도리 506-2, 509-2, 510-4, 511-2, 513-2, 514-1, 515-1, 516-2, 518-5, 523, 528, 529, 530, 536, 629-1, 629-2, 633-2, 634-3, 635-2
		5	대동			5	개도리 681, 682-1, 682-12, 682-13, 700, 700-2, 700-3, 700-4, 700-10, 700-5, 714-1, 715-2, 741-2, 1854, 1864-3, 1864-15
		6	대동			6	개도리 716, 716-5, 723-1, 729-2, 736-1, 737, 739-2, 741-1, 741-2, 741-3, 741-15, 744, 산590-1
		7	대동			<삭제>	
		8	대동				
		9	대동				
		10	대동				
		11	운구지				
⋮	⋮	⋮		⋮	⋮	⋮	
소계	37	91		소계	20		67
⋮	⋮	⋮		⋮	⋮	⋮	
계	212	841		계	212		881

<부칙> 읍면동간 경계조정 <신설>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에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편입)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				지 번	지 목	총면적 (㎡)	이동 면적 (㎡)	비 고
시·도	시·군·자치 구	구·읍·면· 동	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18-8	임	345	345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50	도	7	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50-6	전	109	10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50-7	전	601	60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50-8	전	169	16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1160-1	도	250	25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1-2	임	103	103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1-9	임	207	20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4-2	도	793	793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4-3	임	99	9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4-4	임	1,324	1,324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5-5	임	13	13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5-6	도	31	3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1	임	496	49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2	임	397	39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3	임	257	25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5	임	496	49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6	임	330	33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7	임	397	39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8	임	256	25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9	임	248	24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6-11	임	821	82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23	임	331	33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36	임	170	17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37	임	9	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38	임	76	7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39	임	118	11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0	임	141	14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1	임	179	17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2	임	249	24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3	임	322	322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4	임	381	38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5	임	68	6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6	임	91	9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7	임	31	3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8-48	도	46	4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29-1	임	93	93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32-1	임	28	28	

현행				개정안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 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 구역
광림동		<신설>		광림동	16	1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01동 201호~210호, 301 호~310호, 401호~410호, 501 호~510호
						2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02동 201호~207호, 401호~407호 103동 201호~208호, 401호~408호
						3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04동 101호~105호, 301호~305호 105동 101호~107호, 301호~307호 106동 101호~105호, 301호~305호
						4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07동 101호~104호, 301호~304호 108동 101호~110호, 301호~310호
						5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09동 101호~104호, 201 호~204호, 301호~304호, 401 호~404호 110동 201호~204호, 301 호~304호, 401호~404호, 501 호~504호

현행				개정안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 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 구역
광림동		<신설>		광림동	16	6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11동 101호~105호, 301호~305호 112동 101호~106호, 301호~306호 113동 201호~205호, 401호~405호
						7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14동 201호~206호, 401호~406호 115동 201호~203호, 301호~303호, 401호~403호, 501호~503호 116동 201호~204호, 301호~304호, 401호~404호, 501호~504호
						8	광무동 504(여수 브리온 오션프랑 테라스) 117동 201호~207호, 401호~407호 118동 201호~206호, 301호~306호, 401호~406호, 501호~506호

현 행				개 정 안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동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여서동	2	1	여서동 252~253,256~261-1,264~267-1, 274, 287~298-2,300-1~310-1, 312, 314~317	여서동	2	1	여서동 252~253,256~261-1,264~267-1, 274, 287~298-2,300-1~310-1, 312, 314~317
		2	242-1~242-4,248~248-9,249~249-3, 250~250-3			2	242-1~242-4,248~248-9,249~249-3, 250~250-3
		3	382, 383~383-5, 384~384-7, 385~385-5			3	382, 383~383-5, 384~384-7, 385~385-5
		4	244~244-8, 245-1~245-16, 246~246-8			4	244~244-8, 245-1~245-16, 246~246-8 917 ~ 922-5
		5	395-1~395-2, 396~396-10, 397~397-5, 398~398-4, 399-1~399-9			5	395-1~395-2, 396~396-10, 397~397-5, 398~398-4, 399-1~399-9
		6	381, 386, 397 391-1 ~ 394-5			6	381, 386, 397 391-1 ~ 394-5
		7	378~379-5, 388~390-6			7	378~379-5, 388~390-6
		8	374-4 ~ 374-13, 376~376-8, 377			8	374-4 ~ 374-13, 376~376-8, 377 183-2 ~ 207
		9	374-1~374-3, 375~375-13, 380, 380-1			9	374-1~374-3, 375~375-13, 380, 380-1

2025년 제6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영



여수시 규칙 제862호

붙임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선정 대리인

제14조의2(선정 대리인 신청·지정) ① 조례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여수시 선정 대리인 신청은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여수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는 별지 제21호의3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③ 조례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여수시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별지 제21호의2 서식, 별지 21호의3 서식, 별지 21호의4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 제10호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 제11호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 제12호를 삭제한다.

여수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여수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여수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여수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여수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여수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여수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여수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여수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여수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여수시 선정 대리인

성명		자격	
사무실			
연락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여수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여수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여수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청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락처	
주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관인생략

여수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illegible]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3장의2 선정 대리인</u> <u>제14조의2(선정 대리인 신청·지정) ①</u> <u>조례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여수시</u> <u>선정 대리인 신청은 별지 제21호의2</u> <u>서식에 따른다.</u> <u>② 조례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여수</u> <u>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는 별지 제2</u> <u>1호의3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u> <u>③ 조례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여수</u> <u>시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은 별지 제2</u> <u>1호의4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u>

2025년 제7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규칙 제863호

붙임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현금 3백만원”을 “3백만원”으로, “한다”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국·공채 등 유가증권으로 하되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부터 6월”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하자 보증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 터 10일이내에 보증금으로써 <u>현금 3백만원</u> 을 시에 납입하여 야 한다.	제9조(보증금) ①	----- ----- -----	3백만 원----- 하 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 험증권, 국·공채 등 유가증권 으로 하되 이행보증 보험증서 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 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 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부 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	유효 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하자 보증기간-----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